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19 선고 2023가단11576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문훈성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강창옥

변 론 종 결 2023. 11. 21.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1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8. 1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구명설비 제조 및 판매, 소방설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2) 피고는 C의 대표이사로, C의 주식 75.5%를 보유하고 있다.
- 3) 원고는 2021. 4. 30.까지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C의 주식 24.5%를 보유하고 있다.

나. 골프회원권 매수와 대금 납입

- 1) 피고는 2017. 2. 15.경 주식회사 D의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정회원, 원고는 준회원으로 등록되었다.
- 2) E는 2004. 8.경 개업한 무역, 선용품, 소화기기 도매업체로 그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원고이다. 이 사건 회원권 취득에는 177,184,000원(회원권 가격 1억 7,200만 원 + 중개수수료 70만 원 + 명의개서료 55만 원 + 수입인지대 15만 원 + 취득세 3,784,000원)이 들었는데, 그 돈은 모두 E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다.

다. 관련사건의 경과

- 1) 원고는 2021. 9.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5445), 2022. 12. 8.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 2)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2나72519), 위 항소심에서

2023. 4. 26.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이유 요지는 설령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6,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E는 원고의 개인사업체이다. 원고의 자금 제공으로 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가 제공한 177,18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는 피고가 원고, F와 함께 만든 동업체로 그 지분비율은 피고 51%, 원고와 F 각 24.5%이다. E가 원고의 개인사업체가 아닌 이상 피고가 원고의 자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E가 원고의 개인사업체인지 여부

갑 제7~11, 13호증, 을 제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는 원고의 개인사업체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① E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원고 혼자이고, 피고나 F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피고는 E가 피고, 원고, F의 동업체이고 그 지분비율이 피고 51%, 원고와 F 각 24.5%라고 주장하나, 동업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는 없고 달리 그들 사이의 동업약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가 E와 관련해 위 지분 상당의 투자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역시 없다.

② E는 개업한 지 18년이 넘은 업체이다. 그런데 피고는 E의 수익배분과 관련하여 2018. 9.경

피고에게 500만 원, 원고에게 각 450만 원이 ‘C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을 들고 있는 것 이외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전후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위 1회의 지급사례만으로는 피고나 F이 E의 수익배분을 받아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③ E의 자금집행은 원고가 도맡아 하였고, 피고 등이 E의 자금집행에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C의 경리업무를 맡았던 직원은 관련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E의 통장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자신이 E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한 적은 없었고, E의 계좌는 원고가 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E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원고의 개인적 지출이 많은데, 이를 피고 등이 문제 삼았던 적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⑤ C 직원이 E의 매출 및 미수금 현황 자료를 작성했고, 이를 피고가 검토, 결재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E의 영업이 대부분 C로부터 납품을 받아 다른 업체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이나 원고가 C의 사내이사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검토, 결재는 C가 E로부터 대금을 받아야하는 입장에서 대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바로 배척하기는 어렵고, 위 사정만으로 E가 피고가 포함된 동업체에 의해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C와 E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C의 직원이 E의 업무를 돕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C의 사내이사였고 주주인 점, C와 E의 밀접한 사업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들이 E가 동업체라고 볼만한 유력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이득 반환의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개인사업체인 E의 자금 177,184,000원으로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177,18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3. 8. 1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청구 인용

판사 정왕현